

1.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이메일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제1항)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제

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이메일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을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중”을 “중 도시·군계획시설 명칭의 변경,”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를 “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9호”로 한다.

5.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제14조의 제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9호의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미만”을 “미만 또는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 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 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 -- <u>중 도시·군계획시설 명칭</u> <u>의 변경</u>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u> <u>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u> <u>도</u>
5. ~ 8. (생 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10. ~ 12. (생략)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 4. (생략) 5. <u>제1항제1호·제6호·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u> 제14조(<u>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u>) <신설> (생략) 제15조(<u>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u>)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u>별지 제9호서식</u>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 -----. 2. ~ 4. (현행과 같음) 5. <u>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9호</u>----- 제14조(<u>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u>) ①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u>별지 제9호의서식에 따른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5조(<u>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u>) ----- ----- ----- ----- ----- <u>별지 제9호의2서식</u>----- ----- ----- ----- -----
---	---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
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생략)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

1. ~ 8.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1. (현행과 같음)

2. -----

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 면적 10퍼센트 <u>미만</u>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 4. (생략) ② (생략)	----- ----- <u>미만 또는 50제</u> <u>곱미터 이하</u>----- ----- 2의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창업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 표를 합니다.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주요수종	
			현황	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뒷쪽 참조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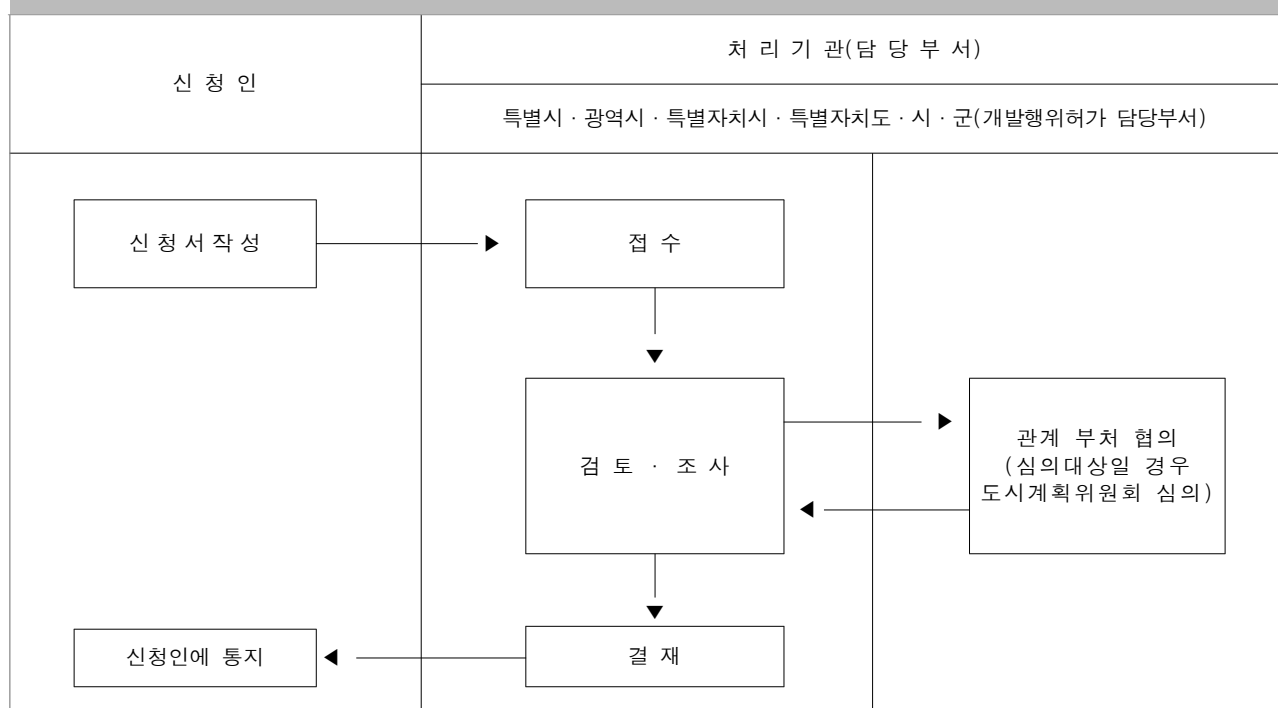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
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
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
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
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
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6.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7.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임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 (선형시설의 경우 B= m, L= m)	
시행방법		시행기간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	
토지(건물) 소재 등	지 번				
	면 적				
	지 목				
	권리명세 (소유 및 동의)				
자금조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3. 토지 서면동의서[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토지의 지번·면적 및 동의내용 기재(지장 날인) 및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 4. 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 사항 및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자금조달계획(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사항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예정 신청일과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예정공정표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처리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 필요로 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이 제출한 토지 확보(동의) 관련 자료	

